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04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가 별지 '처분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세목'란의 '고지세액'란 기재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redacted]대학교, [redacted]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redacted]고등학교, [redacted]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redacted] 중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3.경 [redacte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본관 앞인 서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1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6층, 지상 1층 연면적 68,657.24㎡ 규모의 [redacted] 복합단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는 2008. 4. 28.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4층 일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대학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88㎡), 제2종근린상활시설(277㎡), 제2종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404.8㎡),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796.17㎡)로 각각 용도변경하였으며, 2008. 7. 23.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73.74㎡, 지하2층 301.65㎡, 지하3층 316.88㎡, 지하4층 836.46㎡, 지하5층 799.82㎡, 지하6층 1,047.18㎡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공연장)으로, 지하4층 236.46㎡, 지하5층 403.64㎡를 집회시설(극장-영화관)로 각각 용도변경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은행, 음식점,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복사점, 까페, 기념품점, 공연장, 예술영화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임대보증금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내지 2014년 재산세 기감면분 237,742,02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 9. 10.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47,774,840원을 부과하였다(그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하여 감면배제되었던 금액은 18,470,380원이고, 위 부과처분액 237,742,020원과 합친 256,212,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업종	면적(㎡)	위치
1	제과점	105	지하 4 층
2	음식점(A)	304.13	지하 4 층
3	통신대리점	127.8	지하 4 층
4	은행	277	지하 4 층
5	음식점(푸드코트)	507.04	지하 4 층
6	문구점	152	지하 4 층
7	서점	333	지하 4 층
8	기념품점(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	66.4	지하 4 층
9	카페	234	지하 4 층
10	음식점(중식당)	579	지하 4 층
11	꽃집	64	지하 4 층
12	안경점	121	지하 4 층
13	복사점	241	지하 4 층
14	편의점	121	지하 4 층
15	B	64	지하 4 층
16	C	35	지하 4 층
17	예술영화관	640.1	지하 4~5 층
18	공연장	3,475.73	지하 1~6 층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이 사건 대학교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식당, 서점, 문구점 등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의 구체적 운용에 있어서 이를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1]은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2014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특법 제41조 제2항이, 2013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2012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2011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2010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각각 적용되나,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특법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등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학교의 사업목적과 당해 재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교등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학교등이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학교등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학교등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학교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등과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5, 7, 9,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부분은 '해당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다만 B와 C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뒤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① 이 사건 쟁점부분들의 이용현황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분들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거나 대학교의 이용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쟁점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학교는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제과점과 통신대리점, 까페,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식당, 꽃집, 안경점 등의 경우 일반 상가시설로서 대학교의 구내에 위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기념품점의 경우도 교육적 효과와는 무관한 상업시설이며, 영화관의 경우도 일반 오락·문화시설로서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원고는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중식당, 까페의 경우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식당시설이므로 이 사건 대학교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 구내에는 이미 학생식당과 기숙사 식당을 비롯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5개의 식당이 존재하고, 이 사건 쟁점부분 이외에도 이미 5개의 까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 내의 식당과 까페의 존부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공연장([표]의 순번18 삼성홀 공연장)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학생들이 무용공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연장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학교 또는 그 학생들에 의한 이용보다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인터파크INT에 의한 상업적 이용빈도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주로 연예인 등에 의한 콘서트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대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형태의 이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학교가 위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일자는 연간 일수의 약 1/6에 해당하는 65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교내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갑 제10호증) 그 중 상당수가 외부 학술단체의 회의나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것들이다.

③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대학교 자체의 위치(지하철 2호선 이대역 부근에 위치함)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쟁점부분들에 입주한 위 각 시설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내 구성원들은 이 사건 대학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통해서 복리후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④ 다만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은행과 복사점과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의 경우는 그 이용빈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시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동선 구성상 보다 편리해진다는 측면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용이한 접근성에서 오는 후생의 증진).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위 시설들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으며, 여기서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학교등이 부동산의 임차인 등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학교등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쟁점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 과자점(보증금 5천만 원, 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임 월 3,843,000원), A 레스토랑(임대차 보증금 9억 원, 차임 월 7,443,300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8백만 원), 신한은행(보증금 약 28억 원 및 별도의 관리비), 신세계푸드 음식점(보증금 2억 원, 차임 월매출의 8.5%), E 문구점(보증금 54,600,000원, 차임 월 9,100,000원), [redacted] 서점(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매출의 3.5%), 기념품점(차임 월 매출의 25%), [redacted] 커피전문점(차임 월 매출의 20%), [redacted] 중식당(차임 월 매출의 6%), F 꽃집(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323,650원), 안경점(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4,719,750원), [redacted] 복사점(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7,159,800원), G 편의점(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6,370,000원), 영화관(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3,765,000원), [redacted] 공연장(보증금 76,230,000원, 차임 월 27,200,000원)으로, 그 보증금과 임대료의 수준과 이 사건 대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위 은행과 복사점, 편의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으로부터 수취하는 임차료 등이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원고는 이를 넘어선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의 이용자들 대다수가 이 사건 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학교의 후생복지시설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학교의 위치(지하철 2호선 이대역 부근에 위치함)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대학교 내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이 사건 대학교의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따른 외부 행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보면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시설의 이용자들 대다수가 학내 구성원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쟁점부분 입주 임차인들과 원고 사이의 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외부 이용객이 일정한 비율(1/3)을 넘어설 경우 원고가 이용자 범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이 아닌 외부인들에 의한 이 사건 쟁점부분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다거나, 그에 따라서 외부 이용자의 접근 제한을 시도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수취한 임대수익 등을 모두 교비회계에 전입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임대료의 책정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쟁점부분의 임차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생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쟁점부분이 원고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분 중 B는 이 사건 대학교의 직제상 본부 직속의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기능도 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패션정보자료의 조사·분석·설계, 이 사건 대학교 정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계교육과정 운영(산·한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이 사건 대학교의 연구·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C 역시 이 사건 대학교 직제상 통번역대학원 소속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기능도 이 사건 대학교 출신 통번역사들의 활동지원,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에 의한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통번역학총서 시리즈' 서적의 출간 등으로 이 사건 대학교의 연구·교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임대료를 살펴보더라도 B의 경우 차임 월 1,940,400원, C의 경우 차임 월 1,100,000원으로서(모두 별도의 보증금은 없다)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시설 등의 차임과 비교해 볼 때 '학교등이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경우로서 별도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 중 B와 C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재산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B와 C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부분 중 B와 C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별 지

[단위 : 원]

처분일	귀속연도	과세물건	세목	고지세액	원고주장 정당세액
2014. 8. 4.	2010	건축물	재산세	14,431,880	0
			재산세(도시지역분)	8,081,850	0
			지역자원시설세	10,695,150	0
			지방교육세	2,886,370	0
2014. 8. 4.	2011	건축물	재산세	13,589,020	0
			재산세(도시지역분)	7,609,850	0
			지역자원시설세	10,109,160	0
			지방교육세	2,717,800	0
2014. 8. 4.	2012	건축물	재산세	14,046,790	0
			재산세(도시지역분)	7,866,200	0
			지역자원시설세	10,449,970	0
			지방교육세	2,809,350	0
2014. 8. 4.	2013	건축물	재산세	12,284,570	0
			재산세(도시지역분)	6,879,350	0
			지역자원시설세	9,138,790	0
			지방교육세	2,456,910	0
2014. 8. 4.	2014	건축물	재산세	12,536,600	0
			재산세(도시지역분)	7,020,500	0
			지역자원시설세	9,859,860	0
			지방교육세	2,507,320	0
2014. 8. 4.	2010	토지	재산세	9,096,870	0
			재산세(도시지역분)	6,367,810	0
			지방교육세	1,819,380	0
2014. 8. 4.	2011	토지	재산세	9,220,920	0
			재산세(도시지역분)	6,454,640	0
			지방교육세	1,844,180	0
2014. 8. 4.	2012	토지	재산세	9,014,170	0
			재산세(도시지역분)	6,309,920	0
			지방교육세	1,802,830	0
2014. 8. 4.	2013	토지	재산세	9,386,320	0
			재산세(도시지역분)	6,570,420	0
			지방교육세	1,877,270	0
2014. 9. 10.	2014	토지	재산세	78,002,430	68,281,180
			재산세(도시지역분)	54,171,930	47,367,050
			지방교육세	15,600,480	13,656,230
합계				385,516,860	129,304,460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					256,212,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6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